

연구과제 수행시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1. 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안내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판단기준

구분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과세 여부
정부지원과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연구기관(산단) 귀속	서울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지원받을 때	대가성 없음	해당없음 비과세
정부지원 위탁과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협동)연구기관에 귀속	서울대학교가 위탁을 받을 때	대가성 있음	대가성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적용. 단,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민간연구 (용역)과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지원기관(기업)에 귀속 또는 공동소유	서울대학교가 용역을 받을 때	대가성 있음	

- 면세대상 여부 확인 절차(선택가능)
 - 1안: 계획서상 연구개발비 계상 비목 하단에 “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됨” 포함하여 작성
 - 2안: 교육부에서 발간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 내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요청서” 작성하여 별첨

붙임1.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요청서

2. **면세사업·비과세사업** 수행 중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안내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 또는 권리를 제공받아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용역의 대가에 수반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비거주자 등을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대리납부 적용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분	적용 요건	대리납부 대상 예시	대리납부 비대상 예시
용역 제공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의 지원목적이 아닌 기관의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 일상적인 목적의 데이터 수집(지형, 지리, 수리, 해양, 천문, 기상조사), 통계 조사, 시장 조사 -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 표준화 - 공업단지의 타당성 분석 등 - 특허 및 라이선스 관리 - 정부·기업의 정책제안을 위한 일상적 연구 -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 상업적 목적의 탐사·시추의 대부분 (예: 분석료, 기기사용료, 프로그램사용료, 구독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사용료, 공동조사비용, 공정처리비 등)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		
사용·소비되는 곳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용역을 사용한 과제의 과세여부	면세·비과세 사업 (※과세 과제는 대리납부 비대상)		

○ 대리납부 대상 여부 확인 절차

- 외국법인 등과 계약 전 산학협력단 송혜민 회계사(dominaa@snu.ac.kr, 내선 5275)에게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요청서(대리 납부용)” 제출로 대리납부 대상 여부 확인 (외화 송금 시에만 적용)

붙임2.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요청서(대리 납부용)

[붙임 1]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

<유의사항>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구용역 내역 (* 는 필수기재사항임)

구분	내역
연구용역명	
연구비 지원기관명	
연구비 지원기관담당자	성명/연락처
연구비(단위:원)	
연구책임자	소속/성명/연락처
연구기간	○○○○.○○.○○~○○○○.○○.○○

※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작성방법>

상기 과제가 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기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2]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대리 납부용)

<유의사항>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구용역 내역

구분	내역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성명/연락처
연구비 금액(단위:원)	
연구기간	○○○○.○○.○○~○○○○.○○.○○
연구용역명	
연구용역 제공기관	
연구용역 금액(단위:원)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작성방법>

상기 과제가 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기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